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보험개발원  
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

보도	2023.12.19.(화) 조간	배포	2023.12.18.(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부국장	김종호	(02-3145-8880)
		담당자	선 임	이경태	(02-3145-8719)
	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부문	책임자	부문장	임주혁	(02-368-4276)
		담당자	팀 장	조경원	(02-368-4313)

##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.

### < 주요 내용 >

- ◆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차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  - '22.10월 ~ '23.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,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.8억원\*을 돌려드렸습니다.
    - \* 전년동기('21.10월 ~ '22.9월)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.2억원 증가(33.3% ↑)
- ◆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,
  -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「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」\*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<참고2>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
- ◆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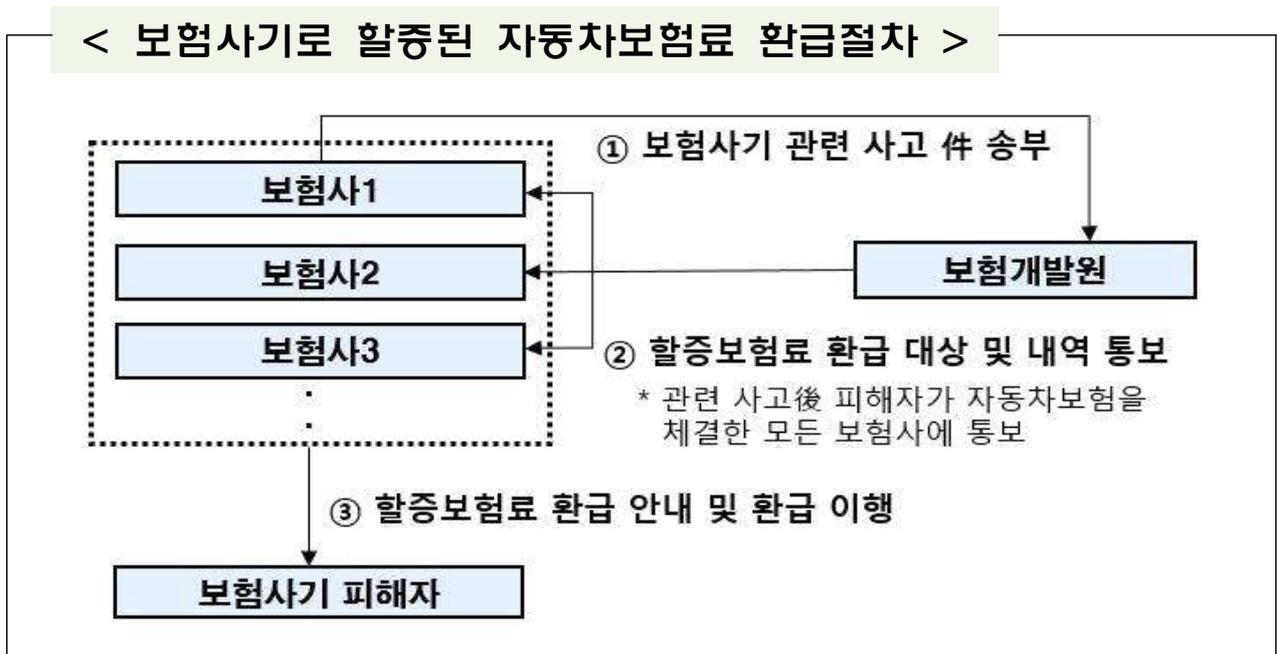
# 1

## 환급제도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\* 피해자(보험계약자)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.

\*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(기소유예 포함)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·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

- ①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
- ②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
- ③ 손해보험사는 피해자(보험계약자)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2

### 할증보험료 환급실적

- (개요) '22.10월 ~ '23.9월 중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,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.8억원을 환급했습니다.
  - 피해자(보험계약자)에게 적극 안내\*를 실시한 결과 환급보험료가 전년동기('21.10월 ~ '22.9월) 대비 3.2억원 증가(33.3% ↑)하였고,
    - \*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①문자메시지, ②우편, ③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안내(보험사별 안내방법은 상이)
  - 환급 인원(2,633명) 및 환급 계약건수(8,717건)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(16.3% ↑), 1,237건(16.5% ↑) 증가했습니다.
- (회사별)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(삼성, DB, 현대, KB)의 환급보험료가 11.8억원으로 전체의 92.1%를 차지합니다.

#### ※ 그간의 할증보험료 환급규모

◆ 제도 도입 이후 '23.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8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0.1억원 환급

(단위 : 백만원, 명, 건)

구분	일괄 환급*	'09.6월 ~ '21.9월	'21.10월 ~ '22.9월	'22.10월 ~ '23.9월	합계
금액	490	5,281	960	1,280	8,011
인원	908	12,422	2,264	2,633	18,227
계약건수	2,971	45,036	7,480	8,717	64,204

\* '06.7월 ~ '09.5월 기간 중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에 대해 일괄 환급실시('09.6월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### 3

## 소비자 안내사항

□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 
적극 제보(☎1332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<참고1>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

□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 
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  
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 
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○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 
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「과납보험료  
통합조회시스템」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☞ <참고2>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

□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  
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 
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## 참고1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

### 보험사기 신고방법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상단 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  
(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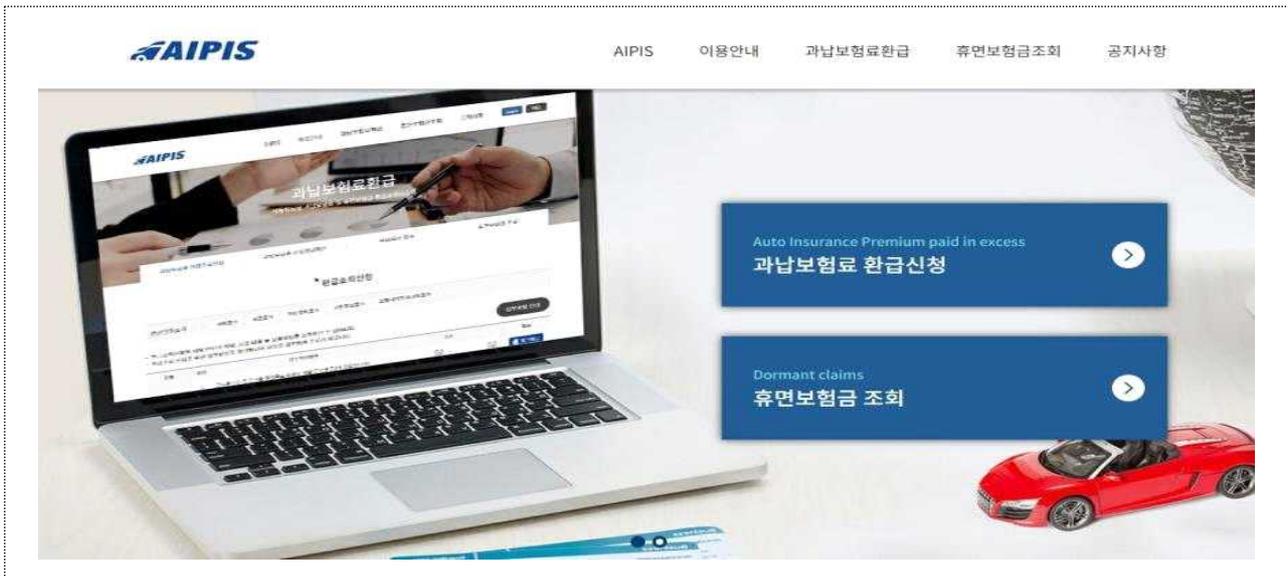
### 보험사기 제보 요령

- ▶ **혐의자(업체)**를 **특정**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**증거자료** 등 **구체적인 내용**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.
- ※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,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▶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**보험범죄로 확인**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·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**소청의 포상금**이 **지급**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참고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

-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idi.or.kr>) 접속 → KIDI 광장 또는 주요서비스의 “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” 링크 접속 → “과납보험료 환급신청”



- 2 휴대폰 문자인증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| 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 | 휴면보험금 조회 | 보험회사 정보

**로그인**

개인고객  법인고객

주민등록번호  -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- 1) 수집·이용 목적
  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신청확인 및 결과조회
- 2) 수집·이용할 항목
  - 개인식별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
  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입력하신 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및 전화번호, 이메일 등
  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보험정보를 조회할 기록
- 3) 보유·이용기간
  -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개월간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3개월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- 4)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  -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
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# ③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“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” 버튼 클릭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
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
휴면보험금 조회
보험회사 정보

#### 환급조회신청

연관업무조회
계약조회
사고조회
가입경력조회
사량정보조회
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
구조변경사량조회

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본인의 계약,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급조회 신청을 위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병무청 연계조회를 통한 군 운전경력기간 증빙은 2014.1.1 이후 전역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첨부파일 안내

병무청연계조회 안내

유형	체크	필수확인항목	기간	첨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본인의 계약,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환급조회 신청을 위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			

전화번호	
------	--

요청

취소

### ④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
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
휴면보험금 조회
보험회사 정보

#### 보험사기피해 환급조회신청

연관업무조회
계약조회
사고조회
가입경력조회
사량정보조회
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
구조변경사량조회

조회

출력

- 귀하의 보험사기피해내역입니다.

보험사기피해사고 처리회사	사고일시	사고 차량번호

- 해당계약은 보험사기사고 이후에 본인이 가입한 해당사고와 관련된 계약이며, 해당계약 중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순번	환급보험사	보험기간	차량번호	담당자번호	환급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급여부 O : 환급완료된 계약 또는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입니다.</li> <li>- 환급여부 X : 귀하께서 보험사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는 계약입니다. 다만, 자료가 오래되어 환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도 포함될수 있습니다.</li> <li>- 해당내용에 대하여 환급요청을 하시려면 아래 환급요청을 click하시기 바랍니다.(단, 환급여부가 'X' 건에 대하여 환급요청됩니다.)</li> </ul>					

전화번호					
------	--	--	--	--	--

환급요청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**사례 1** **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453만원 환급**

- (개요) 보험사기범 A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중인 B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,417만원을 수령
- (사법처리 결과)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
- (보험료 환급)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

**사례 2** **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31만원 환급**

- (개요) 보험사기범 C는 운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D의 차량과 접촉 후 D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80만원을 청구
- (사법처리 결과)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에게 벌금을 선고
- (보험료 환급)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환급